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91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김영진·박희승·조승래

이재정・한병도・박민규

서삼석 · 채현일 · 강유정

임호선 · 허 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 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세부 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 중 "조세부담"을 "조세부담(「국가재정법」 제7 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		
	유)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2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조세부담</u> 수준	4. 조세부담(「국가재정법」 제		
	7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소		
	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한		
	<u>다)</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